

#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724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5년 6월 19일  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안 제7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는 정원진흥실시계획의 세부추진에 관한 하위 범주 및 후속계획에 관한 사항이므로 삭제하고, 전문가 자문 규정은 별도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음.
- 제안 이유인 민간정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‘민간정원의 개방’ 조항에 포함함.

## 2. 주요 골자

- 정원진흥실시계획 수립·시행에 포함하는 사항 삭제(안 제7조제2항제5호 및 제6호)
- 민간정원 등록·운영 등에 관한 전문가 자문 사항 삭제(안 제10조제2항)
- “민간정원의 활성화를 위한 노력”을 제10조(민간정원의 개방)에 포함  
(안 제10조제1항)

## 3. 참고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항 제7호를 제5호로 한다.

안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한다.

- ① 시장은 민간정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,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서울시 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7조(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(생략)</p> <p>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7조(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민간정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</u></p> <p>6. <u>정원문화산업 관련 국제 교류·협력에 관한 사항</u></p> <p>7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7조(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제&gt;</u></p> <p><u>&lt;삭제&gt;</u>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민간정원의 개방) ① <u>시장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서울시 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0조(민간정원의 개방) ①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10조(민간정원의 개방) ① <u>시장은 민간정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,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서울시 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</u></p>
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② (생 략)</p>	<p>② <u>시장은 등록을 희망하는 민간정원의 등록과 등록된 민간정원의 운영 등에 관하여 전문가 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.</u></p> <p>③ (현행 제2항과 같 음)</p>	<p><u>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--	---	--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시장은 민간정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,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서울시 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10조(민간정원의 개방) ① 시장  <u>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</u>  <u>서울시 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</u>  <u>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10조(민간정원의 개방) ① 시장  <u>은 민간정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</u>  <u>력하여야 하고, 법 제18조의6제3</u>  <u>항에 따라 서울시 내의 민간정원을</u>  <u>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